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21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한정애 · 조인철 · 이병진
송옥주 · 박수현 · 이주희
박지원 · 김동아 · 박홍근
양문석 · 김영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25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을 “정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40명”을 “60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0명”을 “5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사처검사) ① (생 략)	제8조(수사처검사) ① (현행과 같 음)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 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u>25명</u> 이내로 한다.	② ----- ----- ----- <u>50명</u> -----.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u>3년으 로</u>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u>정년</u> 은 63세로 한다.	③ ----- <u>정년</u>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생 략)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고, <u>40명</u>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 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② ----- ----- <u>60명</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생 략)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u>20명</u> 이내로 한다.	② ----- <u>50명</u> -----.